참고 1 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

격리대상자 보호 확인서

확인자	성명	전화번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격리대상자와의 관계
	주소	

격리 대상자	성명	전화번호
	생년월일(외국인등록번호)	
	격리기간	
	격리장소	

격리대상자는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2조,「검역법」제16조에 따라 시설격리 동의서를 작성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시설격리 대상입니다.

본인은 격리대상자에게 상기 격리장소*를 제공하고 격리기간 동안 자가격리 수칙 준수 및 관계기관 (보건소·시군구 등)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약합니다.

* 관할 지자체 보건소의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 다른 장소에서 자가격리 가능

붙임 확인자 신분증 사본

년 월 일

확인자

(자필서명)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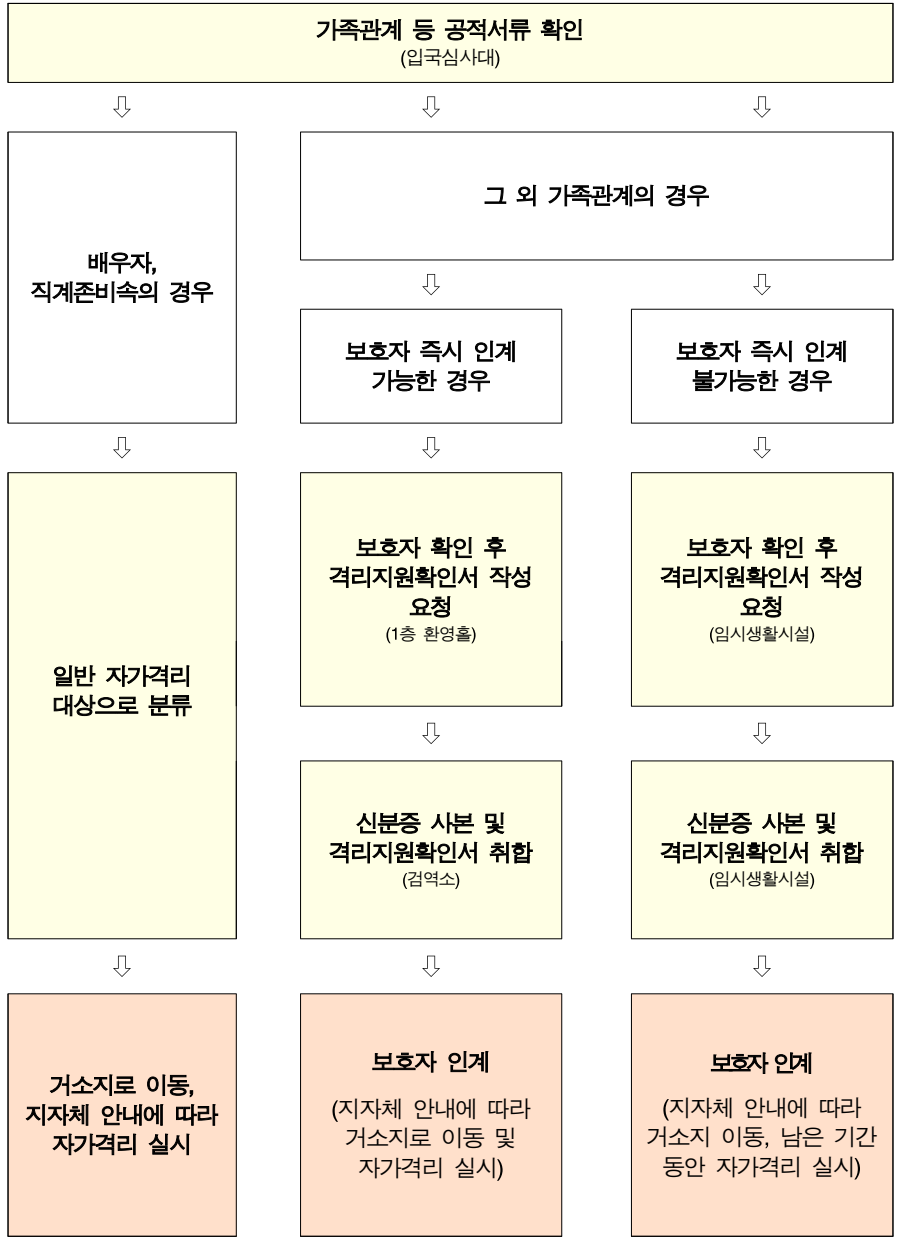
참고 2 자가격리 전환 대상자 관련 절차